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2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부칙안 제2조)

나.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안 제11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 띄어쓰기 준수(안 제1조, 제9조, 제10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9. 28. ~ 2022. 10. 1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조례 제93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중 “2022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 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1조(준용) ----- ----- ----- 「서울특별 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p>
<p>강서구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부칙</p>	<p>강서구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부칙</p>
<p>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2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p>	<p>제2조(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p>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담당: 행정7급 이지원 ☎ 02-2600-6760)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39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어르신복지과	통보(조치)일		2022. 10.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부칙안 제2조)
- 나.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안 제11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 띄어쓰기 준수(안 제1조, 제9조, 제10조제1항)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조례의 존속 기한이 도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34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담당자명	이지원	전화번호	02-2652-450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안소현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2년 09월 30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2년 10월 12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0월 13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